안양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제정 2002. 4. 10 조례 제1772호
일부개정 2007. 6. 21 조례 제2054호
일부개정 2008. 5. 6 조례 제2088호
일부개정 2010. 12. 31 조례 제2288호
일부개정 2013. 9. 30 조례 제2491호(제명개정)
일부개정 2019. 3. 5 조례 제3033호(제명개정)
일부개정 2021. 7. 9 조례 제3321호(제명개정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중소·벤처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안양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3. 9. 30, 2019. 3. 5, 2021. 7. 9>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07. 6. 21, 2010. 12. 31, 2013. 9. 30, 2021. 7. 9>

1. 삭제 <2021. 7. 9>
2. “중소기업”이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.
3. “벤처기업“이란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.
4. 삭제 <2021. 7. 9>
5. 삭제 <2021. 7. 9>
6. “소프트웨어산업”이란 「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」 제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을 말한다.
7. “콘텐츠산업”이란「문화산업진흥 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문화산업 및 「콘텐츠산업 진흥법」 제2조에 따른 콘텐츠산업을 말한다.
8. “정보통신과 관련된 산업”이란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.

[제목개정 2010. 12. 31, 2013. 9. 30]

제3조(적용범위) 안양산업진흥원(이하 “진흥원”이라 한다)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「민법」 등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. <개정 2013. 9. 30, 2021. 7. 9>

제4조(설립 및 운영) 진흥원은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.

<개정 2013. 9. 30>

제5조(진흥원의 사업) 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 <개정 2007. 6. 21, 2010. 12. 31, 2013. 9. 30, 2021. 7. 9>

1. 안양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서 운영하는 벤처센터의 관리 및 운영
2. 삭제 <2013. 9. 30>
3. 삭제 <2021. 7. 9>
4. 삭제 <2021. 7. 9>
5. 소프트웨어산업, 콘텐츠산업, 정보통신과 관련된 산업 육성 사업
6. 안양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위탁하는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육성 사업
7. 중앙정부 또는 경기도에서 위탁하는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육성 사업
8.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②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9. 30>

제6조(정관) 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
1. 목적
2. 명칭
3. 사무소의 소재지
4.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
5. 이사 및 감사의 정수·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
6. 이사회에 관한 사항
7. 기금에 관한 사항
8. 업무감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
9. 직원에 관한 사항
10. 공고에 관한 사항
11. 사업에 관한 사항
12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
② 진흥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9. 30, 2019. 3. 5>

제7조(임원) ① 진흥원에는 이사장 및 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이사

와 감사 2명을 둔다. <개정 2013. 9. 30>

② 이사장은 시장이 된다. <개정 2008. 5. 6, 2010. 12. 31>

③ 원장·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따른다. <개정 2013. 9. 30>

④ 원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.

제8조(이사회) ① 진흥원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.

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회무를 총괄하며,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9조(원장 및 감사) ① 원장은 진흥원을 대표하며, 진흥원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감사는 진흥원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,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제10조(직원) 진흥원의 직원은 정관에 따라 원장이 임명한다. <개정 2013. 9. 30>

제11조(기금) ① 중소기업 육성발전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 <개정 2019. 3. 5>

②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08. 1. 3, 2019. 3. 5, 2021. 7. 9>

1. 벤처기업집적시설 등 기업지원시설의 설치·운영
2. 중소기업에 투자하거나 「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」제71조제4항 각 호의 투자조합에 출자
3. 중소기업의 창업·육성을 위한 진흥원 사업 중 기금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

③ 하나의 기금이 둘 이상의 목적을 수행하는 경우, 목적별로 계정을 구분하여 관리·운용하여야 한다. <신설 2019. 3. 5>

④ 기금의 설치·폐지, 사업계획서 및 연간운용계획에 대하여는 사전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. <신설 2019. 3. 5>

제12조(재원조성)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와 재원

으로 조성한다. <개정 2010. 12. 31>

1. 안양시의 출연재산 및 출연금
2. 경기도의 출연재산 및 출연금
3. 중앙정부의 지원금
4. 금융기관 및 기업 등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금
5. 기금운용과 관련한 이자 수익금
6. 자체사업 및 위탁사업 수익금
7. 그 밖의 수입

제13조(출연금) ① 시는 진흥원의 설립·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9. 30>

② 진흥원이 출연금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9. 30, 2019. 3. 5>

제14조(사업연도) 진흥원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 <개정 2013. 9. 30>

제15조(예산) ① 진흥원은 사업연도 개시 1개월전까지 사업계획서가 첨부된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. <개정 2008. 1. 3, 2019. 3. 5>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, 진흥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 <신설 2019. 3. 5>

제16조(결산)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·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후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개정 2008. 1. 3, 2021. 7. 9>

제16조의2(협의)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1.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
2. 임직원의 채용, 면직 및 임원의 승진 등에 관한 사항
3. 임금, 성과급,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 보수체계에 관한 사항
4. 재산의 취득·처분 등 재산의 중요한 변동

[전문개정 2019. 3. 5]

제17조(업무의 위탁) ① 시장은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지원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흥원에 관련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9. 30, 2021. 7. 9>

② 제1항에 따른 업무위탁에 관한 경비는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. <개정 2013. 9. 30>

제17조의2(시설물의 관리위탁) ① 시장은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지원을 위한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을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9. 30, 2021. 7. 9>

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진흥원에 위탁한 경우에는 운영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, 그 밖의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. <개정 2013. 9. 30>

[본조신설 2007. 6. 21]

제18조(보고 및 검사) ① 시장은 진흥원의 업무,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확인·검사할 수 있으며,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②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보고·검사 및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9. 30>

제19조(공무원의 파견 등) 시장은 진흥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진흥원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. <개정 2013. 9. 30, 2019. 3. 5>

제2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19. 3. 5>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7. 6. 21 조례 제2054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8. 1. 3 조례 제2074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0. 12. 31 조례 제2288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3. 9. 30 조례 제2491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9. 3. 5 조례 제3033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1. 7. 9 조례 제3321호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「안양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른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

② 안양시 산하기관 노동자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안양시 창조산업진흥원”을 “안양산업진흥원”으로 한다.